



제 1 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제 1 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사례. 1

조기영어교육 폐해로 우리말 교정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 | |
|--------------|--|
| 사 건 | 2017서울조정730·731, 2017서울조정732·733(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
|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조선닷컴) |
|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
| 접 수 일 | 2017. 4. 13. |
|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정정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기영어교육의 폐해 때문에 우리말이 서툴러 ‘키즈 스피치 학원’을 찾는 초등학생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조정대상 보도에 한 키즈 스피치 학원에서 신청인 등이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을 촬영·게재하고, 해당 학원에서 ‘한국어 어순 교정’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 이에 대해 해당 사진에 노출된 초등학생인 신청인은 한국어 어순 교정수업이 아니라 스피치 스킬을 배우기 위한 수업이었고,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해당 보도사진은 조기 영어교육과 무관한 수업이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성생님” 영어 조기교육에 허꼬인 아이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7년 4월 12일자 10면, 조선닷컴 4월 12일자 사회면)

■ 내 용

“엄마, 나 먹었어. 밥을”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부 임모(36)씨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다. “학교에서 밥 먹었니”라고 묻자 아들이 영어식 어순으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임씨의 아들은 다섯 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녔고, 집에서도 되도록 영어를 쓰도록 교육받았다. 임씨는 “아들이 평소에 ‘지금 time(시간) 몇 시야’처럼 영어 단어를 섞어서 말해도 ‘영어 잘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말 어순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러다 우리말 못한다고 놀림당할까 봐 부랴부랴 키즈(어린이) 스피치 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최근 ‘키즈 스피치 학원’을 찾는 초등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일대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스피치 학원만 10여 곳이 생겼고, 일대일 개인 과외나 그룹 과외도 성행하고 있다. 과거 웅변 학원이 유행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학원을 찾는 목적이 달라졌다. 웅변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말 발음이나 어순을 교정하려고 학원을 찾는 초등학생이 늘어난 것이다. 영어 유치원과 해외 연수 등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자주 쓰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정작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말이었던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반포동의 한 스피치 학원에서는 “가나다라 마바사…” “가갸겨겨고교…” 같은 발음 연습이 한창이었다. 강사 임송하(29)씨가 학생 두 명을 앉혀놓고 한글 자모음 발음표를 읽고 있었다.

이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한글을 처음 배우는 유아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다. 김민호(가명·7)군은 “ㄹ(리을) 발음이 제일 어렵다”며 “‘라면’ 같은 단어를 말할 때는 친구들이 ‘미국 사람 같다’고 놀린다”고 했다. 다섯 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조기 영어 교육을 받은 김군은 ‘라면’을 ‘뤄면’이라고 발음한다.

학원을 찾는 초등학생 상당수는 ‘ㄹ’을 영어식 ‘r’이나 ‘n’으로 발음하고, ‘ㅅ(시옷)’을 ‘sh’ 발음과 혼동한다고 한다. 서울 대치동의 한 스피치 학원 대표는 “‘선생님 수업해요’라고 할 때도 ‘sh’ 발음을 한껏 섞어서 ‘성쌤님 슈업해요’라고 한다”며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학원을 찾는 아이들 대부분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영어 유치원을 막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 때문에 교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김모(28)씨는 “한 반에 절반 이상이 영어 유치원 졸업자인데 그중 3~4명은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수업을 못 따라간다”며 “아이들이 ‘pink(핑크)’는 알지만 ‘분홍색’은 모르고, 좋아하는 곤충을 물으면 ‘ladybug(무당벌레)’라고 영어로 대답하면서 우리말로 ‘무당벌레’가 뭔지 모른다”고 했다.

김씨는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면, 외국인처럼 ‘Um...(음)’거리면서 말을 더듬는 학생도 많다”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는 주부 장모(36)씨는 “지난달 학부모 총회에 가니까 우리 아이가 ‘오마이갓(oh, my god · 이럴 수가)’ 같은 영어 감탄사를 자주 쓰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까지 물들었다고 핀잔을 들었다”며 “스피치 과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김순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모국어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영·유아 시기에 외국어를 과도하게 교육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둘 다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모국어 어휘나 문장 구조에 익숙해야 나중에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10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영어 배우려다 우리말 못해 스피치 학원 찾아 발음 교정”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1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성생님”영어 조기교육에 혀 꼬인 아이들의 삽입 사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4월 12일자 사회면에 “성생님” 영어 조기교육에 혀 꼬인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서울 서초구 한 키즈 스피치학원에서 강사가 초등학생 3명에게 “한국어 어순 교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아이들은 기사와 전혀 무관하게 발표력 향상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조기영어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영어 조기교육” 기사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지난 4월 12일자 10면 「“성생님” 영어 조기교육에 혀 꼬인 아이들」 제하의 기사에 사용된 보도 사진은 조기 영어 교육과는 무관한 발표력 향상 수업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년 5월 4일(목)까지

가. 제1항의 보도문을 조선일보 10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영어 배우려다 우리말 못해 스피치 학원 찾아 발음 교정)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나. 조선닷컴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4. 2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영어 조기교육’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7년 5월 3일자 10면, 조선닷컴 2017년 5월 3일자 ‘바로잡습니다’ 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

정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 대학생들이 동원됐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 | |
|--------------|-------------------------|
| 사 건 | 2017서울조정734·735 정정·손배청구 |
| 신 청 인 | 최○○ 외 3인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JTBC) |
|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
| 접 수 일 | 2017. 4. 14. |
| 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모 정당의 지역 경선에 특정 대학교 학생들이 동원되는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버스에 탑승중인 신청인들의 사진을 공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학교 행사에 가던 중 찍은 개인적 사진일 뿐,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각 10,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해당 사진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정보도 및 신청인들에게 각 250,000원씩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단독]총학 출신 국민의당 관계자, ○○대생 동원 ‘개입’』 (2017년 4월 11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익산서 광주로, 당 관계자 ‘개입’』 (2017년 4월 12일자 NEWS 아침& 프로그램) 제하의 보도

■ 내 용

- ▷ 앵커 : 지금부터는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10일) JTBC는 지난달 국민의당 광주 지역 경선에 ○○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동원됐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학생들을 실어나른 사람은 국민의당 간부 출신이고, 현재 전북도당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이 직접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 기자 : 국민의당 광주 전남 제주 지역 경선이 열린 지난달 25일, ○○대학교 학생 200여 명은 45인승 버스 6대에 나눠타고 전북 ○○에서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버스를 예약한 사람은 국민의당 소속 전국청년부위원장 출신의 김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대 총학생회 출신으로 현재 전북 ○○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 총학생회 출신의 전 간부도 “김 씨가 국민의당과 연관돼 있는데 이번 학생 동원 건에 김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이 동원됐고 총학 뒤에는 평소 학생회 선거에 깊이 관여해온 김 씨가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대 후배들이 많이 도와준 것은 맞다”면서도 “누구를 찍으라고 시켜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 학생 동원 의혹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벌하겠습니다.
- ▷ 기자 : 광주 선관위와 전북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위해 합동 조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오늘은 버스 회사 관계자와 ○○대 총학생회장을 조사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대생 국민의당 경선 동원』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11일 『총학 출신 국민의당 관계자, ○○대생 동원 개입』 제목의 보도 중 일부 학생들이 버스에서 찍은 사진 2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 속 학생들은 당시 학교 행사에 가던 중이었고 국민의당 광주 경선 동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년 6월 16일까지

가.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제1항의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신청인들 사진 2건 포함)으로 한다.

나. JTBC 홈페이지 <뉴스-정치>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하고, 각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해 검색되도록 한다. 제1항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각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다.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보도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 및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3. 피신청인은 2017년 6월 16일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제2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6. 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대생 국민의당 경선 동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6월 16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6월 16일자 ‘뉴스-정치’ 섹션 초기화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3

가상화폐거래소인 신청인 회사의 회원정보가 해킹당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 |
|-------|---------------------------|
| 사 건 | 2017서울조정1271·1272 정정·손배청구 |
| 신 청 인 | 주식회사 ○○○○○○○○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뉴스1 (뉴스1코리아) |
|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
| 접 수 일 | 2017. 7. 27. |
| 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가상화폐거래소인 신청인 업체의 직원 PC가 해킹당하면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최대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 축소 및 해킹시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가상화폐 탈취 피해는 개인정보 해킹 건과 관련이 없으며, 피해규모나 해킹시기를 조작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수 차례에 걸쳐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6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계좌 무단인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중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정정보도는 반론보도가 적합하다고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규모 축소나 해킹시기 조작, 피해보상 회피 의혹 등 검찰 수사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1

- 뉴스1코리아 - 『[단독]“수십억 털렸다”...○○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일자 산업면)

■ 내 용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 해킹으로 금전피해를 당한 100여명의 회원들이 단체소송에 나선다. ○○의 직원PC가 해킹되면서 수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돈이 빠져나가는 등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2일 ○○ 해킹으로 금전피해를 입은 회원 100여명이 만든 ‘피해자 모임 카페’에 따르면 이들은 ○○을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대표인 A씨는 “○○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카페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할 예정”이라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경찰 사이버수사과에 수사도 요청해놓은 상태다. ‘○○’ 직원들이 이번 해킹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의 서버가 아닌 ○○ 직원의 PC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부자가 연루된 해킹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일 ○○은 지난 29일 직원의 PC가 해킹당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다고 시인했다. ○○ 관계자는 “본사 서버가 아닌 직원 PC가 해킹을 당한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이동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 회원 70만명의 3%인 2만명 수준이지만 이는 ○○에서 밝힌 피해자 규모여서 실제 피해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커로 추정되는 침입자들은 ○○ 회원들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를 해킹한 뒤, ○○ 본사 직원으로 위장해 직접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OTP(무작위로 생성되는 번호 인증방식) 번호를 빼내는 방식을 활용했다.

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OTP 정보를 주지 않은 고객들도 주민등록번호 및 이메일 비밀번호가 해킹돼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하나의 방식이 아닌 여러 해킹 방식을 총동원한 탓에 북한 또는 대규모 해커 집단이 ○○ 해킹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 관계자는 “직원 PC가 외부공격을 받아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신고했고 현재 공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의 가상화폐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으며 현재 예치금 실사중이므로 곧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ISA는 이날 피해업체인 ‘○○’과 공조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KISA 관계자는 “여러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간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와 피해 규모는 조사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2

■ 뉴스1코리아 - 『[단독]개인정보 유출한 ○○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일자 산업면)

■ 내 용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가상화폐거래소 ○○이 수십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은 “통신판매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따른 전체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의 거래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지만 그간 손해보험에 들지않고 수개월간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은 “보험가입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3일 ○○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가상화폐거래소로 서비스를 시작한 ○○은 통신판매업자로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아직 가상화폐가 공식 화폐로 인정받지 못해, 이를 취급하는 플랫폼업체인 ○○도 일종의 온라인쇼핑몰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다. 즉 기존 금융거래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험거운 규제를 받았던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아닌 탓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금융거래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연히 금융거래업체가 갖춰야 할 손해보험 의무가입 여부 역시, ○○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은 지난 4월 손해보험 상품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해왔다. 실제 ○○의 거래액은 지난 5월과 6월 역대 최고치에 달하며 회원수도 70만명으로 급증해 국내 1위 업체로 도약했다.

해킹된 사실이 밝혀진 지난 1일, ○○은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 계약현황을 뒤늦게 삭제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피해자 대표 A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홈페이지에 광고돼 있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 법무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보험이 만료돼 보험 상품에 따른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통신판매업자인 탓에 전체 보상의무는 없고 보통 이같은 사례는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해 배상액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기 전에 실제 계좌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할 것이며 법적 의무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 측의 보상계획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체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달리 ○○이 ‘인터파크’ ‘여기어때’ 등의 해킹 피해사례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액만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것 외에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보안업계에 따르면 ○○에서 무단 이체된 피해액 수십억원 중 일부분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로 넘어간 이상, 범인을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통한 전체 보상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현재로선 가상통화가 감독대상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으로 가상통화 규율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거래소들의 운영이나 거래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정대상보도3

- 뉴스1코리아 - 『[단독]“정상계좌라는데 털렸다” ○○, 피해규모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4일 산업면)

■ 내 용

해킹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준 이용자 계좌에서도 돈이 무단으로 인출된 것으로 밝혀져, ○○이 개인정보 유출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 해킹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의 ‘개인정보 유출조회’에서 정상계좌 판정을 받았는데 계좌의 돈이 사라진 피해자들이 수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 해킹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 1일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3일 ○○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조회했더니 ‘회원님 계정은 안전하다’고 나와서 안심했는데 이날 내 계좌에서 80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를 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금전피해자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분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해액을 줄여 보상액을

줄이려는 의도로 피해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금전탈취를 당한 피해자들은 비밀번호를 직접 탈취당한 사례보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 ○○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 피해가 아닌 이용자 책임으로 물고가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정상계좌로 확인된 피해자 B씨의 계좌 유출 화면. 해커는 1분도 안되는 시간에 B씨의 비트코인을 탈취했다.

피해자들은 ○○이 지난 3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도 꿈수라고 지적한다. 또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것도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피해자모임 대표 A씨는 “피해액이 최소 100억원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회사 서버가 아닌 직원이 집에서 쓰는 PC로 자꾸 특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체소송 참가자가 500여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번 해킹에 ○○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경에 압수수색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3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이 포함돼 있다. 수사는 대검에서 주도하게 된다.

한편 ○○은 지난 4월 손해보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이를 갱신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이 게재했다가, 해킹 사건이 터지자 이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정대상보도4

■ 뉴스1코리아 - 『3만명 고객정보 털린 ○○…5월부터 해킹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5일자 산업면)

■ 내 용

가상화폐거래소 ○○의 해킹 피해가 지난 6월 29일보다 훨씬 이전인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피해자 규모를 3만명으로 축소해 정부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만큼, 해킹당한 시기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5일 ‘○○’ 해킹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 해킹 사실을 시인한 지난달 29일 이전인 지난 5월부터 계좌 해킹으로 의심되는 무단인출 사례가 수십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월에 발생한 해킹 피해와 마찬가지로, 5월에도 피해자들의 이동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미리 파악하고 ○○의 직원으로 위장해 OTP번호(무작위로 생성되는 번호 인증방식)를 빼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비밀번호를 직접 탈취당한 피해자도 적지 않다.

5월에 피해를 당했다는 A씨는 “내 이동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5월 21일, ○○ 직원으로 위장해 OTP 번호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을 요구했다”며 “이들이 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해킹은 그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 역시 “5월 2일, 해킹이 의심되니 해외IP 접속을 차단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나 OTP번호가 아닌, 단지 SNS 본인 인증번호만 알려줬는데 계좌의 돈이 무단인출됐다”며 “○○이 밝힌 피해자 3만명 집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5월에 이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지만 “○○과 경찰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도 6월 이전부터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 관계자는 “해킹에 따른 피해가 아닌 개인 부주의일 가능성이 커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무단인출 사례의 연관성은 검·경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사건의 연관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

한편 ○○ 피해자 모임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무단인출 사례를 분리하는 ○○의 태도가 전액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0여명의 피해자들이 동참했으며, 변호사 선임을 준비중이다. 또 주중 네이버 카페 외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 모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3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에는 개인 정보 침해사고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이 포함돼 있다. 수사는 대검에서 주도하게 된다.

조정대상보도5

- 뉴스1코리아 - 『[단독]○○ 해킹 피해 지속…“어제도 수억원 털렸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산업면)
- 내 용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피해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고객계좌에서 돈이 무단인출되는 2차 해킹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피해가 지난달 말 처음으로 공론화되면서 경찰과 검찰까지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도 해커들의 공격에 ○○이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운영중단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쯤, ○○을 이용해온 피해자 A씨는 계좌에 있던 2100만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무단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A씨는 “○○에서 보낸 메일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메일을 확인했는데 알고보니 ○○으로 위장한 해커가 보낸 것이었다”며 “그렇다고 별다른 숫자를 기입하거나 등 해킹에 응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단순히 메일만 확인했는데도 이후 계좌에 돈이 무단 인출된 것을 알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시흥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정작 ○○에선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피해자 A씨와 같은 사례는 지난 주말에만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액수로는 최소 7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A씨의 사례는 앞서 공개된 보이스피싱과 비밀번호로 인한 해킹이 아닌 이메일을 통한 해킹 수법이라 추가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하다.

이번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정상계좌’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좌의 돈이 무단인출된 것으로 확인돼 ○○ 측의 안일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또 ○○이 시인한 것과 달리 이메일과 이동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액, 구매 시기 등 구체적인 계좌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면서 “○○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 개인정보 유출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출금 정지’ 조치를 내려 이들 계좌에 대해서는 피해여부를 확인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의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 측은 여전히 “개인정보유출과 보이스피싱 등 해킹 피해의 연관성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관계자는 “해킹에 따른 피해가 아닌 개인 부주의일 가능성이 커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 피해자 모임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무단인출 사례를 분리하는 ○○의 태도가 전액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0여명의 피해자들이 동참했으며, 변호사 선임을 준비중이다. 주중 네이버 카페 외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 모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까지 됐다는 11명의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범죄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이 벌어진 과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아직 해킹 피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킹사건과 관련 경찰의 가상화폐 인출 신고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부는 ○○ 직원 PC 해킹 사건 자체를 수사하고 있다.

조정대상보도5

■ 뉴스1코리아 - 『[단독]책임 회피하던 ○○ “무단인출 피해, 보상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8일자 산업면)

■ 내 용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하고 계좌 ‘무단인출’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온 가상화폐거래소 ○○이 뒤늦게 무단인출 피해자들에게 보상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못믿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고객자산위원회’를 마련하고 이번 해킹 사건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지난 17일부터 별도 피해 접수 현황 창구도 만들었다.

앞서 3만명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10만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과 별개로 무단인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처음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조사 이후에나 보상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펴왔다.

○○ 관계자는 “신고 접수 페이지를 개설해 사고 여부를 접수하고 고객자산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검·경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해킹 원인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 입장에도 피해자들은 “또다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손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전액 보상할 능력이 없는 만큼, 여전히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피해자 A씨는 “피해자 현황과 해킹 피해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소송에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해킹 방식이 다양한 데다 ○○의 내부 문서까지 유출돼 서버 해킹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끝까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되자 3만여명의 회원들에게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회원들의 무단 인출 사실이 수백여건 확인되면서 3만명이라고 밝힌 피해자 규모 자체에도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 측이 시인한 이메일과 전화번호 유출 외에도 고객들의 구체적인 계좌 정보와 ○○ 내부의 사업계획 문서까지 유출된 만큼, 검찰과 경찰에서도 ○○ 측에 서버 해킹 사실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 지난 4월 손해보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이를 갱신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양상이다.

○○ 피해자 모임은 ○○ 측이 “보상 여부를 별도 심사 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무단인출 사례를 분리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0여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변호사 선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1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도 지난 3일부터 합동조사단을 꾸려 압수수색을 비롯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커는 ○○의 서버를 공격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후, 충북대 등 국립대 서버를 우회해 그간 무단인출 및 보이스포싱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뉴스1 코리아 인터넷사이트(<http://www.news1.kr>)의 초기화면 기사목록 최상단에 [별지] 기재 각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3일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각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위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각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1. 제목 : 『“수십억 털렸다”…○○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2일 산업(IT/과학)면에 “수십억 털렸다”…○○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 「○○의 직원PC가 해킹되면서 수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돈이 빠져나가는 등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대표인 A씨는 “○○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커로 추정되는 침입자들은 ○○ 회원들의 전화 번호와 계좌정보를 해킹한 뒤, ○○ 본사 직원으로 위장해 직접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OTP(무작위로 생성되는 번호 인증방식) 번호를 빼내는 방식을 활용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직원 PC 해킹을 통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가상화폐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은 아니었고, 가상화폐 계좌에서 가상화폐가 무단으로 인출된 피해자가 수만 명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에 계좌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한 해커가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OTP 번호를 빼내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1. **제목** : [단독]개인정보 유출한 ○○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췌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3일 산업(IT/과학)면에 [단독]개인정보 유출한 ○○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가상화폐거래소 ○○이 수십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은 “통신판매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따른 전체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근 회원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뿐 보상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서는 「특히 ○○의 거래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지만 그간 손해보험에 들지 않고 수개월간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은 “보험가입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 경우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사실이며, ○○이 고객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해킹 사고로 인하여 보험 갱신이 되지 않는 것임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3〉

1. 제목 : 「“정상계좌라는데 털렸다” ○○, 피해규모 축소 의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4일 산업(IT/과학)면에 「“정상계좌라는데 털렸다” ○○, 피해규모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 「피해자모임 대표 A씨는 “피해액이 최소 100억 원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회사 서버가 아닌 직원이 집에서 쓰는 PC로 자꾸 특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체소송 참가자가 500여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번 해킹에 ○○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경에 압수수색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피해액이 최소 100억 원을 넘는 것은 아니고, ○○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4〉

1. 제목 : 「3만 명 고객정보 털린 ○○…5월부터 해킹당했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5일 산업(IT/과학)면에 「3만 명 고객정보 털린 ○○ … 5월부터 해킹당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의 해킹 피해가 지난 6월 29일보다 훨씬 이전인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피해자 규모를 3만 명으로 축소해 정부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해킹당한 시기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이 피해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해킹 시기를 조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서는 「5월에 이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지만 “○○과 경찰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도 6월 이전부터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개인정보 유출 이외에 별도의 해킹이 6월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6월 이전에 고객들에게 발생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고를 알았다는 내용으로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5〉

1. **제목** : 「[단독]○○ 해킹 피해 지속…“어제도 수억 원 털렸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10일 산업(IT/과학)면에 「[단독]○○ 해킹 피해 지속…“어제도 수억 원 털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피해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고객계좌에서 돈이 무단인출되는 2차 해킹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피해가 지난달 말 처음으로 공론화되면서 경찰과 검찰까지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도 해커들의 공격에 ○○이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운영중단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해킹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 직접 해커들의 공격에 당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에서 「또 ○○이 시인한 것과 달리 이메일과 이동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액, 구매 시기 등 구체적인 계좌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면서 “○○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구체적인 계좌정보는 유출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서 「현재 ○○이 개인정보 유출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출금 정지” 조치를 내려 이들 계좌에 대해서는 피해여부를 확인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의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은 고객 보호를 위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계좌 인출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6〉

1. **제목** : 「[단독]책임 회피하던 ○○ “무단인출 피해, 보상하겠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2. **본문** : 뉴스1코리아는 지난 7월 18일 산업(IT/과학)면에 「[단독]책임 회피하던 ○○ “무단인출 피해, 보상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이같은 ○○의 입장에도 피해자들은 “또다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손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전액 보상할 능력이 없는 만큼, 여전히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피해자 A씨는 “피해자 현황과 해킹 피해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소송에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해킹 방식이 다양한 데다 ○○의 내부 문서까지 유출돼 서버 해킹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끝까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손해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액을 보상할 자력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고객자산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 서버가 직접 해킹 당했음이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 회원 개인정보 유출’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지는 2017년 7월 2일 산업면 『[단독]“수십억 털렸다”…○○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 2017년 7월 3일 산업면 『[단독]개인정보 유출한 ○○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뺌』, 2017년 7월 4일 산업면 『[단독] “정상계좌라는데 털렸다” ○○, 피해규모 축소 의혹』, 2017년 7월 5일 산업면 『3만명 고객정보 털린 ○○…5월부터 해킹당했다?』, 2017년 7월 10일 산업면 『[단독]○○ 해킹 피해 지속…“어제도 수억원 털렸다”』, 2017년 7월 18일 산업면 『[단독]책임 회피하던 ○○ “무단인출 피해, 보상하겠다”』 제하의 각 기사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주식회사 ○○○○○○닷컴(이하 ‘○○’이라 함) 직원의 PC가 해킹되면서 수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 축소 및 해킹시기 조작 가능성 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자 규모를 3만 명으로 축소해 정부에 신고하거나 해킹 시기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 피해보상을 회피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은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는 가상화폐 탈취 피해는 위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아니며, 위 개인정보 해킹 사건 이전에도 발생하던 사고들로서 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경찰 수사 및 KISA,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고, ○○ 서버가 직접 해킹 당하거나 회원들의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은 위 개인정보 해킹 당시 고객 보호를 위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계좌 인출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판결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원들에게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가. <뉴스1(<http://www.news1.kr/>)> 산업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제1항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 기재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나.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2017. 8. 2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뉴스1코리아 - 『‘○○ 회원 개인정보 유출’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산업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4

국방부가 여군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 |
|-------|---------------------------------------|
| 사 건 | 2017서울조정1995, 2017서울조정1996(병합) 각 정정청구 |
| 신 청 인 | 국방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닷컴) |
|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
| 접 수 일 | 2017. 11. 2. |
| 처리결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국방부가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43년 만에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여군 병사 모집제도 부활을 검토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검토계획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신청인은 내부 아이디어 공모전에 해당 안건이 제안되었을 뿐 공식적으로 채택된 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피신청인은 육군 내부 문건을 확인하였으며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것이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중재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언론사의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보고, 국방부에서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계획한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1

- 『여군 병사 43년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7년 11월 1일자 1면, 아시아경제닷컴 2017년 11월 1일자 정치면)

■ 내 용

국방부가 현역병 군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43년만에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성 일자리창출과 군내부의 여성인력 확대 차원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의경, 공익근무 요원 등 전환대체복무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을 현역으로 전환해 연간 7만여명의 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연간 3만여명의 병력부족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할 경우 부족해지는 병력을 일단 여군 병사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여군 모집병의 복무기간을 놓고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또한 모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군 병사가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군 병사모집제도의 법적근거에 대해 헌법 제 2장 11조 평등권, 39조 국방의 의무,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를 근거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여성의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병력 50만명 수준의 감축과 병사 복무 기간의 18개월 단축 등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여군의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를 감안해 여성의 일자리창출과 군내부의 여성인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 현재 국군의 여군 비율은 5.6%(약 1만 여명)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군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약 15%(약 2만 5천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군병을 모집하기 이전에 여군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여군의 지휘관 보직제한, 모호한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대상보도2

- 『男軍과 동일하게 21개월 복무…월급은 특별수당 포함 3배』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7년 11월 1일자 2면, 아시아경제닷컴 2017년 11월 1일자 정치면)

■ 내 용

국방부가 여군병사모집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TV토론이나 유세 등을 통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에 따라 증장기 과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정부에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연간 3만 3000여명이 부족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 3000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준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 수준인데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가용자원이 부족해진다.

국방부는 여군병사를 모집한다면 현재 예비군 관리대대 등 향방 상근부대 8000여개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들을 현역으로 대체하고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여군병사의 경우 출퇴근이 가능해 현재 근무중인 남군병사와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군을 위한 추가시설 확보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여군병사가 상근부대에 적응할 경우 여군의 장점을 활용한 인사행정, 정보, 군종, 정훈 등 병과에 대폭 확대시켜 적용시킬 방침이다.

특히 여군 병사는 신병교육대에서 남군과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기간은 상근예비역의 교육기간(4주)과 동일하게 교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남군 병사가 방공포부대와 정밀유도무기를 다루는 부대에 배치될 경우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1~2개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군 병사는 상근예비역의 임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기간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여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맞췄다. 다만 군복무 중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남군병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물론 가산점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문제는 남군병사와 여군병사에 대한 월급의 형평성 문제다. 국방부는 일단, 징병제인 남군과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지원률이 떨어질 것으로 고려해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급 67만원에 특별수당 75만원을 합쳐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약 17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근예비역의 공백을 메울 경우 군은 연간 14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남군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병장 기준 월급을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886원으로 88%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요구안대로 하면 남군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상병은 36만6229원, 일병 33만1296원, 이병 30만6130원이 된다. 여군병사에 비해 30%수준이다.

조정대상보도3

- 『한국여군 시초는 교련교사, 1949년 32명 양성...여군병사는 1953년 첫 모집』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7년 11월 1일자 2면, 아시아경제닷컴 11월 1일자 정치면)

- 내 용

한국여군의 시초는 정부 수립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조직된 중등학교 이상 학도호국단의 교련교사로 양성된 여자배속장교다. 1949년 여자청년호국대지도자로 양성된 여자배속장교는 32명이었다. 당시 훈련을 담당한 훈련대장 김현숙 초대 병과장은 학도호국단이 폐지된 후 신성모 전 국방장관실에 배치돼 지리산 등지의 공비토벌작전 중 생포된 여자공비의 전향 임무를 수행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김현숙 병과장은 여자배속장교 출신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자의용군 모집을 건의해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됐다. 당시 지원 자격은 18세~25세의 미혼여성으로 중학교(당시 6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였는데, 3000명의 지원자 중 500명이 제1기생으로 선발됐다. 제1기생 대부분은 학교 교사이거나 중학교 졸업자,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 당시는 엘리트 여성들이 주축이었다. 교육대는 이후 여자의용군훈련소로 개칭됐다.

그러나 여자의용군훈련소는 그 설립목적이 교육훈련기관이었기 때문에 배출된 대한 인사관리·활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여자의용군 제2기 배출 이후 훈련소에 대한 별다른 활용방안도 없었다. 1951년 11월 15일 여자의용군훈련소를 해체하고, 육군본부 고급부관실(부관감실)에 여군과를 설치했다. 이어 군에 잔류해 각 국감실과 부대에 배속된 여자의용군(이후 여군)에 대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 수행토록 했다.

여군병사를 처음모집한 것은 이때부터다. 군은 타자 기술이 도입되면서 여군 주특기 확보 차원에서 1953년부터 여군병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준은 만 17~24세의 중학교 이상 졸업여성으로 전화교환병, 타자병 등 비전투분야에 활용됐다. 당시 여군병의 복무기간은 징집병으로 근무하는 남군병사와 같이 38개월이었다.

여군병사가 늘어나면서 남군과 동일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등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양성기관도 생겨났다. 1955년 7월 교육총감부 예측으로 서울 서빙고에서 만들어진 여군훈련소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1974년에 폐지된 여군병사 모집대신 현재 군은 부사관과 장교 등 여군간부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군에 복무중인 여군은 장교 4590여명, 부사관 5500여명이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대부분은 내전이 잦은 국가들이며 일부 국가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실행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 징집에 나서는 건 양성 평등 차원에서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2016년 7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나토의 일원인 노르웨이는 전쟁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남성도 학업이나 건강,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사유로 어렵지 않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징병제가 도입된 것이다. 노르웨이 여군병사는 남군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를 한다.

스웨덴은 내년부터 여성징병제를 실시한다. 징집 대상은 18세 청년으로, 9~12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스웨덴 정부는 “현대의 징집제도는 젠더(성별)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남녀 의무 징병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시아경제 1면 3단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아시아경제 홈페이지(<http://www.asiae.co.kr>)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정정보도 내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기사를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및 포털(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기사에서 삭제하도록 하며, 해당 기사를 복제하여 게시된 각종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기사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여군 병사 모집제도 43년 만에 부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2. 본문 : 아시아경제에서는 지난 11월 1일 뉴스에서 “여군 병사 모집제도 43년 만에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국방부는 현역병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43년 만에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혼선과 국방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시아경제> 종합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21개월 복무...장교지원도 가능”과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아시아경제닷컴(<http://www.asiae.co.kr/news/>)>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별지 1]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기재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나.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6.

[별지] 결정 보도문

- 가. 제목 :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지는 2017년 11월 1일자 종합면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현역병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국방부는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계획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7년 12월 1일자 종합면, 아시아경제닷컴 2017년 12월 1일자 정치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참조>

사례. 5

신청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 |
|-------|-------------------------------------|
| 사 건 | 2017서울조정358, 2017서울조정359(병합) 각 손배청구 |
|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방송(MBN), 주식회사 매경닷컴(인터넷 MBN) |
|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
| 접 수 일 | 2017. 2. 21. |
|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난 2012년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져 총선에서 낙선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막말을 하거나 그로 인한 논란 때문에 낙선했던 것이 아니라며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은 담당 기자가 다른 방송인의 막말 파동과 착각한 점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전하였으며, 중재부에서는 악의나 고의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배상액을 협의해볼 것을 당사자에게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5,000,000원과 함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원만히 화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입당하자마자 제명』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2월 18일자 '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2월 18일자 뉴스면)

■ 내 용

- ▷ 앵커 : 인터넷 팟캐스트 ‘○○ ○○○’ 진행자로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격의 선봉에 섰던 김○○ 씨가 자유한국당 대선주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후보들이 난립하는 한국당을 비꼬는 행보로 풀이 되는데, 한국당이 곧바로 제명하고 나섰습니다.
- ▷ 기자 :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낙선한 김○○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 때마다 자신의 막말 이력을 들춰내는 방송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입당했다고 비꼬았습니다.
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 한국당은 입당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제명했습니다.
- ▷ 정준길/자유한국당 대변인 : “경기도당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탈당할 수 있도록 제명 조치를…”
입당 후 본인 SNS에 당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당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고, 당의 약칭을 ‘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당’으로 칭하며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제명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씨는 “입당이 장난이냐”며 “제명 결정 취소와 당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씨를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김○○ ‘위안부 막말’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2월 18일 <MBN 뉴스8> 프로그램에서 「입당하자마자 제명」이라는 제목으로 ‘김○○ 씨가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낙선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 씨는 위안부 막말을 한 바가 전혀 없어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1.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2017. 3. 26.(일)까지 제1항의 보도문을 <MBN>에서 저녁 19:30에 시작하는 <MBN 뉴스8>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블루스크린 화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표시하고, 뉴스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제1항의 보도문을 낭독한다.
3. 피신청인 2.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2017. 3. 26.(일) 23:00부터 <인터넷 MBN> 홈페이지 (<http://mbn.mk.co.kr/>) <MBN 뉴스8 다시보기> 섹션에 제2항에 따라 보도된 방송내용을 다시보기 VOD로 게시한다.
4. 피신청인들은 제2항, 제3항과 같이 보도문을 게재한 이후,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즉시 전송한다.
5.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계좌로 2017. 3. 24.(금) 18:00까지 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및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03.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김○○ ‘위안부 막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3월 25일자 ‘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3월 25일자 ‘뉴스8 다시보기’ 섹션)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6

신청인이 대부받은 국유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 |
|-------|--------------------------|
| 사 건 | 2017경남조정7·8 정정·손배청구 |
| 신 청 인 | 방○○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고성미래신문사(인터넷 고성미래신문) |
|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
| 접 수 일 | 2017. 5. 2. |
| 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부계약한 국유 농지를 인·허가 없이 불법 전용, 아스콘 포장하여 개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훼손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가 된 토지 부분은 계약 당시부터 농지가 아닌 대지였으며, 이미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있던 부분을 군청에서 인근 도로를 확장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실시한 것인데 마치 불법으로 전용한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신청인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하고, 국유지 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담아 정정보도하기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돼』 제하의 기사 (인터넷 고성미래신문 2017년 3월 31일자 사회면)

■ 내 용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아스콘 포장을 하고 개인 주차장 및 주택 출입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유지인 이곳은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용,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면 ○○리 ○○-○번지(답)는 국유재산으로 마을 주민에게 대부계약 되어 있다. 총 916㎡ 면적 중 약 700㎡는 A씨가, 약 200㎡는 B씨가 각각 대부한 것으로,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B씨는 이곳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개인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농지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농지를 개발할 경우 인.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유재산(전.답)을 대부할 경우 경작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계약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 사용은 이와 다르게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명확한 대부계약을 했다. 그런데 주택 앞 군도가 확장되면서 주택이 도로보다 낮아지고 출입로도 협소해 아스콘 포장을 한 것이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고성군 농지부서도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불법전용으로 드러났다.

B씨가 편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자의 말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경작을 목적으로 한 국가소유 토지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 된다”면서 “정확하게 파악 후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도 “해당 토지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 만약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시켰다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현장 확인 후 불법일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것이다. 그럼에도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절차가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홈페이지 첫화면 오피니언 오른쪽 뉴스공간 및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 2번째 문단을 168시간(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168시간(7일)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31일자 사회면에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라는 제목으로 국유지 대부자(B씨)가 불법을 자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신문은 분명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B씨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보도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도로포장은 고성군에서 진행된 것으로 B씨는 책임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 관련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3. 31.자 사회면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 제목의 기사에서 국유지인 ○○면 ○○리 ○○-○번지(답) 가운데 200㎡를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B씨가 이곳에 아스콘 포장을 해 개인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농지를 훼손했고, 농지를 개발할 경우 인·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씨는 2012년 2월 국유지 200㎡를 경작 100㎡, 대지 100㎡로 구분해 대부계약 체결하였고, 현재 아스콘 포장된 곳은 B씨가 거주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멘트로 포장된 상태였는데 2015년 고성군이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할 당시 B씨의 민원 요구에 따라 아스콘 포장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B씨는 “고성군이 농지를 대지로 사용하도록 대부계약을 해 준 것이 문제이므로 해당 부지를 지적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 5. 23.까지 제1항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뉴스웹사이트(www.gofnews.com)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사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여 함께 표시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5.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정정보도] “○○면 ○○리 국유농지 불법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 관련』 제하의 기사 (인터넷 고성미래신문 2017년 5월 22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